



## ◎ 2024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 **신설 장려금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원 기간)	지원인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1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10명 미만은 3명)
지원방식		
① 공모형: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 ②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참여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전자·기계식 방식의 출퇴근 기록 장치를 도입하고 최소 3개월 간 이를 활용한 이후 참여신청서 제출 가능 ④ 고양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처: 031-920-3978		

- 일감나누기 등을 통해 기업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인 사업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별지를 확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장려금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시차출퇴근)**

- 유연근무제 유형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외,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인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70명 한도 (10명 미만은 3명)

**지원방식**

- ① 공모형: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② 지원 요건 및 금액

유형	1개월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③ 모든 유형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변경 장려금①: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노력을 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추가 되었으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기준을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10% 이상 이직시킨 사업주를 지원 제한 사업주로 판단하는 조항은 유예기간을 두어 '24. 7. 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장려금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또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024년 1월 9일 이후인 사업장의 경우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할 것**, 채용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일 것** 등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19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2023년 기준 110만원에서 **2024년 1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고용촉진장려금과 동일함)

◆ **변경 장려금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계속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기존까지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청년의 **실업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고양지청** 또는 **고양고용센터** 공고를 통해 운영기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의 사항들**

- 이외, 고용촉진장려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18종에서 12종**으로 변경되었고, 고용장려금 **별로 달랐던 소수점 이하 처리방식(소수점 이하 버림)**, 지원한도 인원 산정 기준(**10인 미만**) 등을 통일하여 지원금 간 혼동이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올해,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 ◆ 6+6 부모육아휴직제(확대개편)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단,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첫달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상향되어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의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통기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 육아휴직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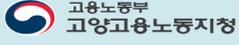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母: 200	父: 500 (200+150+150) 母: 200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母: 500 (200+150+150)	父: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750 (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母: 950 (200+150+150+150+150+150)	父: 750 (200+250+30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1,950 (200+250+300+350+400+450)

## ◎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 ◆ 고양고용센터 채용행사 '함께할 GO양!' 개최

-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시행되는 정기적인 채용행사로 매월 첫째~넷째주 모두 일자리 채용행사를 진행하며, 테마별 서비스로 첫째주에는 이력서 컨설팅(사진촬영 서비스)가 제공되고 넷째주에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취업특강 정보가 제공됩니다.
- 행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고양고용센터 본관 5층 채용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고 구직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모든 구직희망자께서는 사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기타 행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양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수요데이 행사 담당자(031-920-3912)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고용센터

#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일시 | **매주 수요일 14~16시**  
 장소 | **고양고용센터 5층 채용행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문의 | **031-920-3912, 3932, 3943**



<b>첫째주</b>	<b>이력서 컨설팅 받Go!</b> 이력서컨설팅 / 이력서 사진촬영 / 현장 면접
<b>둘째주</b>	<b>일자리 찾Go!</b> 현장 면접
<b>셋째주</b>	<b>면접 참여하Go!</b> 현장 면접
<b>넷째주</b>	<b>취업할 Go양!</b> 현장 면접 / 취업역량강화 교육

자세한 내용은 트리플메타타운 <sup>행사게시판</sup>에서 확인하세요

 트리플메타타운 





## 붙임1 트리플메타타운 안내

고용+노동+복지 온라인 행정타운  
트리플 메타타운 체험하기

### 트리플 메타타운 QR코드 모음집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홈페이지



취업지원



기업지원



실업급여



실업인정



국민취업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외국인고용



메타타운 바로가기

## 대한민국 최초 고용노동복지 온라인 행정타운 “트리플 메타타운”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뿐만 아니라 고양·파주지역을 관할하는 지청과 유관 기관의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가능한 트리플메타타운이 6월 출범하였습니다.

복잡한 온라인 페이지 대신 센터 내부를 그대로 축소한 메타타운으로 한눈에 19개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고양고용센터의 공금특특게시판,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한 빠른 상담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고용노동복지 온라인 행정타운 ‘트리플 메타타운’은  
상단 QR코드 또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트리플메타타운 바로가기 접속법

: 네이버 > 검색창에 ‘트리플메타타운 바로가기’ 검색 > 블로그 접속 > 블로그 내 바로가기 링크  
([https://blog.naver.com/triple\\_metatown/223116367219](https://blog.naver.com/triple_metatown/223116367219))

## 붙임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리플릿(좌)

www.work.go.kr/youthjob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넌  
특별해!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0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02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립  
지원필요청년, 복원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자 제외) 등



####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붙임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리플렛(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 03 지원조건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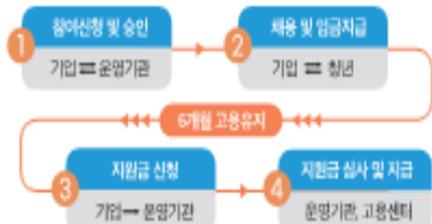
#### 04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2배 확대 가능(단, 최대 60명)

#### 05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내 사업  
참여신청 시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업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더 알아보기 신청하기

